

● 제336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6. 6. 18.

운 영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】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신동원 의원(10명 찬성)
- 나. 제안일 : 2026. 5. 26.
- 다. 회부일 : 2026. 5. 27.
- 라. 의안번호 : 3692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통지 및 출석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,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 측면에서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.
- 이에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, 위원장 및 의원과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게 개회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 하도록 하고, 출석요구서의 송달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,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, 위원장 및 의원과 윤리심사

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 
(안 제85조의2 신설)

- 윤리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 절차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 
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함(안 제87조제1항)

다. 참고사항

(1) 관계법령 : 없음

(2) 예산조치 : 없음

(3) 기타사항

- 1) 소관부서 의견조회 : 원안동의

## 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정진영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(안 제85조의2 신설), 심문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87조제1항 후단 신설).

### 2 개최일시 및 장소 등 통지(안 제85조의2 신설)

- 안 제85조의2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, 위원장 및 의원과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<개정안 제85조의2 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5조의2(회의 개최 통지)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	<u>1.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, 위원장 및 의원</u> <u>2.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 자</u>
--	---

-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는 의원의 신분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인 만큼, 회의 일정 및 장소 등에 관한 사전 통지는 절차적 적법성과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.
- 특히 현행 회의규칙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통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통지 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, 이를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절차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통지대상에 “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, 위원장 및 의원”을 포함한 것은 요구권자에게 회의 일정 등을 알림으로써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, 특별한 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3 출석요구서 송달(안 제87조제1항)

- 안 제87조제1항 후단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는 경우,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**<개정안 제87조 신·구조문 대비표>**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안
제87조(심문 및 변명)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  ② (생   략)	제87조(심문 및 변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개최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.</u>  ② (현행과 같음)

- 현행 규칙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장을 거쳐 관계 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- 이에 따라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출석이 요구될 경우 대상자의 소명 준비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,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한을 명문화하려는 입법취지는 절차적 권리보장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  - 특히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는 의원의 명예와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, 대상자가 출석요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참고로 국회규칙인 「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은 징계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심사요구의원 및 심사대상

의원에게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<sup>1)</sup>, 심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<sup>2)</sup>하고 있는바, 개정안은 이러한 국회 입법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
#### 4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통지 및 출석요구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의 절차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,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소명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개정으로 볼 수 있음.
- 특히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는 의원의 신분 및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인 만큼, 회의 개회 통지 및 출석요구서 송달 기한 등을 명문화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태훈	02-2180-7689

1) 「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(위원회개회의 통지) 위원장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 “심사요구의원”이라 한다)  
2.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(이하 “심사대상의원”이라 한다)

2) 「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6조(심문)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.